|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풀이할 것 |

**【문제 1】(25점)**

거주자 갑, 을, 병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다.

**(물음 1)** 갑의 2024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  |
| --- |
| **< 자 료 >**   1. 갑(복식부기 의무자임)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동생과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사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0원이며이다, 이는. 매출총이익 480,000,000원과 영업외수익 2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4,000,000원, 유형자산(차량운반구)처분이익 6,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동사업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과 출자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동사업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과 출자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손익분배비율 | 지분비율 | | 갑 | 50% | 40% | | 배우자 | 25% | 30% | | 동생 | 25% | 30% |        |  |  |  | | --- | --- | --- | | 구 분 | 손익분배비율 | 지분비율 | | 갑 | 50% | 40% | | 배우자 | 25% | 30% | | 동생 | 25% | 30% |    2. 갑의 공동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어음할인료: 2,000,000원(갑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7,000,000원    ③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5,000,000원(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9,000,000원     ⑤ 법인세가 과세된 신탁재산분배금: 3,000,000원    ⑥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5,000,000원 |

**<요구사항 1>**

갑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및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이자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액 |  |
|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총수입금액 |  |

**<요구사항 2>**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가산액 |  |

**<요구사항 3>**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금액 |  |

**(물음 2)** 을(45세, 여성)의 2024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을이 2024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근무처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 ㈜A | 2024. 1. 1.∼2024.10. 31. | 영업사원(상용직) | | ㈜B | 2024.11. 1.∼2024.12. 31. | 영업사원(일용직) |       2. 을이 ㈜A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기본급\*1 | 20,000,000원 | | 자녀학자보조금 | 1,000,000원 | | 식 대\*2 | 3,000,000원 | | 퇴직급여\*3 | 30,000,000원 |    \*1  을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500,000원을 사용자가 대리납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며 매월 300,000원씩 지급됨   \*3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임      3. 을은 ㈜B로부터 40일분의 급여(일당 400,000원)와 근로제공일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7,0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4. 을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을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내 용 | | 부 친 | 74세 | 양도소득금액 500,000원  장애인 | | 배우자 | 48세 | 사업소득금액 1,000,000원 | | 아 들 | 16세 | 소득 없음. 학생 |    5. 을(무주택 세대주)은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15,000,000원을 상환하였다.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내 용 | | 부 친 | 74세 | 양도소득금액 500,000원  장애인 | | 배우자 | 48세 | 사업소득금액 1,000,000원 | | 아 들 | 16세 | 소득 없음.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을(무주택 세대주임)은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15,000,000원을 상환하였다.    6. ｢소득세법｣ 제47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표 일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요구사항 1>**

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공제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근로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근로소득 총급여액 |  |
| 근로소득공제액 |  |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근로소득금액 |  |

**<요구사항 2>**

을의 인적공제액 및 특별소득공제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구 분 | | 금 액 |
| 인적  공제액 | 기본공제액 |  |
| 추가공제액 |  |
| 특별소득공제액 | |  |

**(물음 3)** 병(40세, 남성)의 2024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병의 기타소득 관련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상표권을 대여로하고 받은 금액: 6,000,000원(실제 확인된 필요경비는 4,800,000원임)   ② 제작된 이후 200년이 경과된 골동품 1점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80,000,000원(실제 확인된 필요경비는 71,000,000원이며 보유기간은 11년임)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 10,000,000원(퇴직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임)    ④ 알선수재에 따라의하여 받은 금품: 7,000,000원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 2,000,000원     2. 병(간편장부대상자)의 기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근로소득금액 | 33,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     2. 병(간편장부대상자임)의 기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근로소득금액\*1 | 33,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2 | 50,000,000원 |     \*1 총급여액 45,000,000원, 2024년 6월30일에 퇴직함   \*2 전액 부동산매매업에 발생한 사업소득임    3.  사업소득은 전액 분양권양도(보유기간 4년)에 의한 매매차익(양도가액: 110,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이다.    4.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장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모두 신고하였다.    5. 병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39세), 와 딸(7세)이 있으며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다.    6. 병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비로 6,500,000원,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로 8,000,000원 딸의 상처치료를 위한 수술비로 1,850,000원을 지출하였다.    7. 병은 연금저축계좌에 5,000,000원, 퇴직연금계좌에 3,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①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A에서 받은 45,000,000원이며, 병은 2024년 6월 30일에 퇴직하였다.     ②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은 전액 분양권(보유기간 4년) 양도에 의한 매매차익(양도가액: 110,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이다.     ③ 사업소득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모두 신고하였다.   3. 병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39세), 딸(7세)이 있으며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다.   4. 병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비로 6,500,000원,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로 8,000,000원, 딸의 상처치료를 위한 수술비로 1,850,000원을 지출하였다.   5. 병은 연금저축계좌에 5,000,000원, 퇴직연금계좌에 3,000,000원을 납입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  |  | | --- | ---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

**<요구사항 1>**

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 |  |

**<요구사항 2>**

병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병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일반산출세액 및 비교산출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일반산출세액 |  |
| 비교산출세액 |  |

**<요구사항 3>**

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7,000,000원 이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33,000,000원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병의 의료비세액공제액 및 기장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의료비세액공제액 |  |
| 기장세액공제액 |  |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

**【문제 2】(5점)**

거주자 갑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A 및 건물B의 양도 관련 자료이다.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토지A(등기)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취 득 일 | | 2021.2.15. | | 양 도 일 | | 2024.1.5. | | 양도시 | 실지양도가액 | 500,000,000원 | | 기준시가 | 300,000,000원 |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 불분명 | | 감정평가가액 | 250,000,000원 | | 매매사례가액 | 200,000,000원 | | 기준시가 | 150,000,000원 |  |  |  |  | | --- | --- | --- | | 취득일 | | 2021. 2. 15. | | 양도일 | | 2024. 1. 5. | | 양도시 | 실지양도가액 | 500,000,000원 | |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 300,000,000원 |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 불분명 | | 감정평가가액 | 250,000,000원 | | 매매사례가액 | 200,000,000원 | | 개별공시지기준시가 | 150,000,000원 |      ① 토지A의 개량을 위해 6,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② 취득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500,000원이며, 양도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는 1,500,000원이다.    2. 건물B(등기)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취 득 일 | | 2007.7.1. | | 양 도 일 | | 2024.10.5. | | 양도시 | 실지양도가액 | 250,000,000원 | | 기준시가 | 150,000,000원 |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 100,000,000원 | | 감정평가가액 | 120,000,000원 | | 매매사례가액 | 160,000,000원 | | 기준시가 | 110,000,000원 |   .     ① 건물B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0,000원이다. 이는 그 사업의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으로서 양도 시 상각부인액 3,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② 건물B를 취득한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4,000,000원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   |  |  |  | | --- | --- | --- | | 취득일 | | 2007. 7. 1. | | 양도일 | | 2024. 10. 5. | | 양도시 | 실지양도가액 | 250,000,000원 | |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 150,000,000원 |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 100,000,000원 | | 감정평가가액 | 120,000,000원 | | 매매사례가액 | 160,000,000원 | |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 110,000,000원 |   ① 건물B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0,000원이며, 그 사업의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이다. 단, 양도당시 상각부인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② 건물B를 취득한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4,000,000원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6,000,000원이 지출되었다.     ③ 건물B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명도비용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④ 건물B는 2024년 1월 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해약하였고, 2024년 6월 5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25,000,000원 발생하였다.    3.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이다. |

**<요구사항 1>**

토지A 및 건물B의 양도로 인한 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구 분 | 토지A | 건물B |
| 양도차익 |  |  |
| 과세표준 |  |  |

**<요구사항 2>**

거주자 갑이 건물B를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의 취지를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문제 3】(20점)**

**(물음 1)** 겸영사업자인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2024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대한(중소기업)은 농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세) 또는 미가공(면세)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으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2.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1개동(보유 기간 15년)을 ㈜대한의 대표이사에게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임대하기로 하였다. 저온저장고의 일시 임대용역은 ㈜대한에서도 처음 발생하는 거래이고 적정임대료도 알려져 있지 않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해당 건물의 시가는 71,736,000원이며, 정기예금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3. ㈜대한은 2010년 1월 1일에 매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4년 10월 31일에 41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양도하였으나, 가해당 금액에 대한 건물 및 부속토지의 구분이은 불분명하다. 양도계약일 현재 각 자산별 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기준시가 | 감정평가가액 | 장부가액 | | 건 물 | 2억원 | 2억원 | 1억원 | | 부속토지 | 2억원 | 3억원 | 2억원 |      4. 2024년 농산물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구 분 | 가공(과세) | 미가공(면세) | | 1.1.∼6.30. | 4,000,000,000원 | 1,000,000,000원 | | 7.1.∼9.30. | 800,000,000원 | 900,000,000원 | | 10.1.∼12.31. | 700,000,000원 | 800,000,000원 |   5.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하다.   |  |  |  |  | | --- | --- | --- | --- | | 구 분 | 가공(과세) | 미가공(면세) | 공통매입세액 | | 1.1.∼6.30. | 80,000,000원 | 40,000,000원 | 50,000,000원\*1 | | 7.1.∼9.30. | 30,000,000원 | 9,000,000원 | 34,000,000원\*2 | | 10.1.∼12.31. | 60,000,000원 | 8,000,000원 | 15,000,000원\*3 |   \*1 농산물 세척용 기계장치A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2 농산물 절단용 기계장치B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3 농산물 분쇄용 기계장치C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6. 2024년에 면세농산물의을 매입에한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대한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하다.   |  |  | | --- | --- | | 구 분 | 면세농산물 매입액 | | 1.1.∼6.30. | 1,120,000,000원 | | 7.1.∼9.30. | 884,000,000원 | | 10.1.∼12.31. | 468,000,000원 |      7.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이다. |

**<요구사항 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의 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하고, 1년은 366일로 한다.

|  |  |
| --- | --- |
| 구 분 | 과세표준 |
| 농산물 매출 |  |
| 저온저장고 무상임대 |  |
| 건물과 부속토지 매각 |  |
| 합 계 |  |

**<요구사항 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하시오.

|  |  |  |
| --- | --- | --- |
| 구 분 | | 과세표준 |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 83,000,000원 |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면세사업분 |  |
| 공통매입세액 |  |
| 공제되는 매입세액 | |  |

**<요구사항 3>**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재계산 고려 전)이 5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을 고려한 후의 납부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납부세액(재계산 고려 후) |  |

**(물음 2)** 두 종류의 상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일반과세자 김한국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매출이 하락하여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거래와 관련된 법적절차는 완료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① A상품의 매출액은 27,2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 중 1,100,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A상품의 매출액은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다.       ② B상품의 매출액은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이며, 이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B상품(원가 11,000,000원, 시가 15,400,000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공급한 것이다. B상품의 매출액은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다.     2. 2024년 제1기의 매출은 제2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2 3.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상의 의한 매입세액은 2,400,000원이며,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았이다.    3 4. 2024년 7월 1일 현재의 자산현황   |  |  |  | | --- | --- | --- | | 구 분 | 취득가액 | 취득일 | | 상 품 | 8,000,000원 | 2024년. 5월. 8일. | | 건 물 | 100,000,000원 | 2021년. 9월. 1일. |   4 5.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전자신고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김한국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전)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납부세액 |  |
|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 |  |

**<요구사항 2>**

김한국이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전)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납부세액 |  |
|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 |  |

**【문제 4】(25점)**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중소기업 아님)의 제30기 사업연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78,92060,000,000원이며, 이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1,200,000,000원(시가의 75%)이다.    2. 손익계산서상 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는 59,730,000원이며, 이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대표이사가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8,730,000원 (건당 3만원 초과)        ② 2023년 12월 30일 고객을 접대하면서 발생한 법인카드사용액 1,000,000원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분(대금청구일: 2024년 1월 15일)      3. 약정에 따라 포기한 거래처 ㈜D(특수관계 없음)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매출채권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3,00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    4. 건설중인자산(본사건물)으로 계상한 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는 81,000,000원이며, 본사건물은 2024년 7월 17일에 완공되어 즉시 사용 개시하였다. 본사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내용연수는 2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대한비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신고와 일치한다. 리를 하였다.    5. 보유주식A보유주식A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A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양사의 장기적 우호관계 형성을 위해 ㈜A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② 2024년 10월 1일 ㈜A에 대한 매출채권 60,000,000원은 2024년 10월 1일 주식A(액면가액 5,000원,) 3,000주)로 출자전환되었다.       ③ ㈜A는의 2024년 세무상 결손금 잔액은 없으며,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는 1주당 8,000원이었다.     ④ 출자전환에 대하여 양사의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하였다.   |  |  |  |  | | --- | --- | --- | --- | | ㈜대한의 회계처리 | | | | | 차)투자주식 | 60,000,000 | 대) 매출채권 | 60,000,000 |  |  |  |  |  | | --- | --- | --- | --- | | ㈜A의 회계처리 | | | | | 차)투자주식매입채무 | 60,000,000 | 대) 자본금 | 15,000,000 | |  |  | 주식발행초과금 | 45,000,000 |     6. 보유주식B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24년 5월 1일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할 목적으로 상장법인 ㈜B(영리내국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지분율 0.2%)를 거래수수료 150,000원을 포함한 37,150,000원(장부금액)에 취득하였다. 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차)단기투자주식 | 37,150,000 | 대)현금 | 37,150,000 |       ② 2024년 12월 15일 ㈜B는 현금배당(1주당 500원, 배당기준일: 2024.10.15.)당 500,000원에 대한 잉여금처분결의에 대한 잉여금처분결의를 하였다.가 이루어졌으며(배당기준일: 2024.10.15.),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대한은 2025년 1월 20일 현금배당을 수령하면서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2024년 12월 31일 주식B의 기말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차)단기투자주식평가손실 | 1,150,000 | 대)단기투자주식 | | 대)단기투자주식 | | 1,150,000 |      7.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12,300,000원은 전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며, 차입금은 없다.    8.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적용률   |  |  | | --- | --- | | 수입금액 | 적용률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2% |     9. 출자비율 20% 미만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  |  | | --- | --- |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20% 미만 | 30% | | 20% 이상 50% 미만 | 80% | | 50% 이상 | 100% | |

**<요구사항 1>**

㈜대한의 제30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2>**

2024년 출자전환 관련 ㈜A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민국의 제30기 사업연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민국은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  |  |  | | --- | --- | --- | --- | | 차입처 | 이자율 | 차입금 | 이자비용 | | 사채\*1 | 15% | 30,000,000원 | 2,000,000원 | | A법인\*2 | 0% | 50,000,000원 | 0원 | | X은행 | 8% | 150,000,000원 | 9,600,000원 | | Y은행 | 9% | 90,000,000원 | 8,100,000원 |      \*1  사채는 채권자의 실명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12월 27일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다.음. 동 사채의 알선수수료 300,000원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2  A법인은 ㈜대한민국과 특수관계에 있음인임    2. 확장이전 목적으로 기존 공장 부근 토지를 2010년 8월 23일 5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당기말까지 확장이전을 위한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장 건설을 개시하지 않았다.  . 당해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3,800,000원을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였다.     3.  대표이사에게 2024년 7월 1일 주택구입자금 1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4. 1년은 366일로 가정하며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이다. |

**<요구사항>**

㈜민국의 제30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3)** ㈜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2021년 1월 1일 신제품 개발을 담당할 갑(임원)을 채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였으며, 갑은 2024년 7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①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에 따르면 권리부여일로부터 3년간 근로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국의 주식을 1주당 행사가격 7,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     ②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한국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000원이며, 이때 교부된 자기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2,500원이다.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차)현금 | 7,000,000 | 대)자기주식 | 12,500,000 | |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 5,500,000 |  |  |      ④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성과급은 세법에서 정하는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2.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 10월 9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개발완료 즉시 신제품을 미국시장에 출시하였다. 신제품 개발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개발비 지출액을 모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회계기준에서 정한 개발비 요건을 충족함).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개발부서 인건비 | 500,000,000원 | | 개발 관련 실험비 | 100,000,000원 | | 개발부서 관리비 | 300,000,000원 | | 합 계 | 900,000,000원 |      ① 개발부서 인건비 중 50,000,000원은 신제품 개발 성공대가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갑에게 2024년 12월 10일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며,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 |

|  |
| --- |
| ② 개발부서 관리비 중 40,000,000원은 신제품 홍보를 위한 박람회 개최비용이다.     ③ ㈜한국은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상각비로 25,500,000원을 계상하였다.     ④  갑은 정관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금 25,000,000원을 2024년 12월 30일에 지급받았다.     ⑤ 2023년 12월 31일 개발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개발촉진적립금(임의적립금)을 재원으로 상여금 87,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고, 2024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였다.   3. ㈜한국은 무차입 기업으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없다. 1년은 366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이다. |

**<요구사항>**

㈜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문제 5】(15점)**

**(물음 1)**비상장 중소기업인 ㈜서울의 제14기 사업연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서울은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서울은 ㈜대한의 보통주 30%를 보유한 주주인데이며, ㈜대한은 2024년 5월 1일자로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구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다.        ① 증자 직전 ㈜대한의 주주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들은 모두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  |  |  | | --- | --- | --- | | 주 주 | 주식수 | 지분율 | | ㈜A | 4,000주 | 40% | | ㈜서울 | 3,000주 | 30% | | ㈜B | 2,000주 | 20% | | ㈜C | 1,000주 | 10% | | 합 계 | 10,000주 | 100% |  |  |  |  | | --- | --- | --- | | 주 주 | 주식수 | 지분율 | | ㈜A | 4,000주 | 40% | | ㈜서울 | 3,000주 | 30% | | ㈜B | 2,000주 | 20% | | ㈜C | 1,000주 | 10% | | 합 계 | 10,000주 | 100% |         ② ㈜대한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20,000원,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3,000원이다.        ③ ㈜대한의 주주 중 ㈜A와 ㈜B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④ ㈜서울과 ㈜A는 법인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2. ㈜서울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① 대표이사가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000,000,000원이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2곳에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은 각각 5,800,000,000원, 6,000,000,000원이다.      ②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서울의 보통주 시가를 평가한 결과 1주당 40,000원이었다. |

**<요구사항 1>**

㈜대한이 실권주를 다른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재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서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실권주를 다른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재배정하는 경우 |  |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키는 경우 |  |

**<요구사항 2>**

㈜서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대표이사의 토지를 취득하려 한다. ㈜서울이 토지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매입가격과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최대 보통주 주식수를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매입가격은 1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보통주는 1주 단위로만 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오.

|  |  |
| --- | --- |
| 구 분 | 답 안 |
| 최대 매입가격 |  |
| 최대 보통주 발행주식수 |  |

**(물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한국의 제13기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제14기 사업연도(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의 결손금 내역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제1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400,000,000원 | | 이월결손금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00원 | | 산출세액 | 46,500,000원 | | 감면 및 공제세액 | △19,900,000원 | | 총부담세액 | 26,600,000원 |  |  |  | | --- | --- | | 구 분 | 신고내용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400,000,000원 | | 이월결손금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00원 | | 산출세액 | 46,500,000원 | | 감면 및 공제세액 | △19,900,000원 | | 총부담세액 | 26,600,000원 |       2. ㈜한국은 제14기 사업연도에 150,000,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3. ㈜한국은 제13기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최대한으로 환급받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4. 제13기 및 제14기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19%이다. |

**<요구사항 1>**

㈜한국이 신청할 소급공제 결손금 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소급공제 결손금 금액 |  |

**<요구사항 2>**

위 <요구사항 1>과 독립적으로 ㈜한국은 제14기에 발생한 결손금 중 120,000,000원을 소급공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한국의 제13기 및 제14기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제13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450,000,000원, 제14기 결손금은 60,000,000원으로 경정되었다. 이 경우 ㈜한국의 소급공제 신청으로 인한 법인세 환급세액과 관할세무서의 경정에 따른 법인세 추징세액(이자상당액은 제외)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환급세액 |  |
| 추징세액 |  |

**【문제 6】(10점)**

**(물음 1)** 2024년 4월 1일 사망한 갑(60세)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  |
| --- |
| **< 자 료 >**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소재 은행에 예치 중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미수이자 상당액은 는 5,000,000원으로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7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② 시가 1,500,000,000원인 상당의 국내 소재 주택     ③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 ㈜A의 주식 20,000주(갑은 최대주주가 아니며, ㈜A의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25,000원임)   ④ 국외 소재 은행에 예치된 500,000,000원의 예금(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갑 명의 계좌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2. .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채무로는 주택담보대출 400,000,000원이 있으며,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 중 국내 소재 주택을 담보물로 하여 2014년 중 국내 소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3. 봉안시설을 제외한 장례비용은 9,000,000원이며, 봉안시설 비용은 56,000,000원으로 모두 증빙명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4. 2023년 10월 1일에 상속인인 장남에게 국내 소재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장남의 토지 취득 자금은 그 출처가 입증되었다.      ① 양도 당시 시가: 300,000,000원      ② 양도가액: 130,000,000원 |

**<요구사항 1>**

갑이 거주자인 경우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총상속재산가액 |  |
| 과세가액 공제액 |  |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

**<요구사항 2>**

갑이 비거주자인 경우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위 <요구사항 1>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 2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물음 2)** 거주자 을은 2024년 1월 16일 시가 2억원인 토지를 장남 병(30세)에게 증여하였다. 그러나 병은 을과 합의 하에 해당 토지를 다시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는 않았다. 병이 을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시기에 따른 을과 병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답안양식에 제시하시오. 단, 병의 반환 시기는 구체적인 날짜의 범위로 표시하고, 증여세 납세의무는 “있음”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  |  |  |
| --- | --- | --- |
| 을병의 반환 시기 | 증여세 납세의무 | |
| 갑을 | 을병 |
| 예시) 2024년 2월 29일까지 | 있음 | 없음 |
|  |  |  |
|  |  |  |

* **끝 -**

여 백

여 백

여 백